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지각되는 보상과 부담

최승혁 김시엽*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범죄유발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행위결과에 뒤따르는 보상과 부담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목록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Bouffard(2002, 2007)가 제안하고 검증한 피험자 산출(subject-generated) 기법을 응용하여, 과거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죄유형인 폭행·방화·살인과 관련된 가설적인 범죄유발 시나리오를 대학생 370명(남성 169명, 여성 201명)에게 제시 한 후, 이에 대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기술하게 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록들을 찾아냈다. 연구 결과 산출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은 다중응답 빈도분석되었고, 가장 빈번히 응답된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자존심'(폭행 보상),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폭행 부담); '화풀이'(방화 보상), '달라질 것 없음'(방화 부담); '화풀이'(살인 보상), '죄책감'(살인 부담). 또한, 빈번히 응답된 목록들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에 따라 보고될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 지지'(폭행 보상)를 보고할 가능성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더 높았고, '법적 처벌'(폭행 부담)을 보고할 가능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감소했다, '사회원망'(방화 보상)을 보고할 가능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감소했다, '자기 목숨 보호'(살인 보상)를 보고할 가능성은 범죄실행 가능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 감소했고, '죽일 용기가 안 남'(살인 부담)을 보고할 가능성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적었다. 각 범죄의 보상과 부담 목록들은 PIC-R의 조망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졌다. 이에 더해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과 본 연구의 분석이 비교되어졌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그리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범죄, 보상과 부담, PIC-R, 합리적 선택이론

사람들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큰 이익이나 손해로 다가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때 행동선택은 더욱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

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범죄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 범죄유발상황에 처했을 때, 범행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결정에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성향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궁극적으로 범행과 관련하여 지각된 보상과 부담의 주관적인 손익계산이 반영

* 교신저자 : 김시엽,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4, E-mail : mind@kyonggi.ac.kr

될 것이다.

이성식(1996)은 Edwin H. Sutherland가 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범죄자들의 경력과 성향에 관한 ‘경력적’ 연구와 범죄상황에 대한 ‘상황적’ 연구가 있음을 지적하고 범죄에 대한 상황적 연구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범죄행위에 관한 이론은 크게 범죄성향이론과 범죄상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범죄성향이론은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범죄상황이론은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범죄발생이 범죄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즉각적인 상황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실증주의 범죄학에 기초한 범죄대책 방안의 실패로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가 아직까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영인과 염건령(2005)도 또한 범죄상황이론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통합적 연구(김영신, 이훈구, 1993)와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질적인 연구(김준호, 이성식, 1995),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성식, 1996), 그리고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황지태, 2004) 등 우리나라에서는 간헐적으로 범죄행동에 대한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나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연구는 외국의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고, 또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상황적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는 있으나, 보상과 부담의 구체적인 유형을 밝힌 연구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범죄유발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즉각적인 범죄유발상황에서 범행과 관련하여 지각된 보상과 부담의 주관적인 손익계산이 상당부분 의사결정에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그 보상과 부담의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상과 부담 유형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들 모두를 아우를 것이다.

사회심리학,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이론들 중에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보상과 부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론들이 있다. 먼저 사회심리학 이론들 중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고 다양한 행동의 이익과 손실을 평가한다고 가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의사결정이론과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된 결과들의 가치의 주관적 유용성을 최대화시키려 든다고 주장하는 기대가치이론,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본 과정들은 기능적 쾌락주의에 따르며, 따라서 모든 유기체와 특히 인간들은 보수, 유쾌 및 만족을 최대화 시키려고 들고, 부담, 고통 및 처벌을 최소화 시키려고 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George C. Homans의 사회적 교환이론 등이 있다(홍대식, 2004; Franklin II, 1982, 2005; Taylor, Peplau, & Sears, 2006).

이들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현상은 한 개인의 특정행위에 뒤따르는 보상과 부담이 또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입되는 보상과 부담이 한 개인의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의 호오의 지각 및 유지에 중요한 핵심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이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인 범죄행위의 실행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주요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들 중 보상과 부담의 지각된 결과가 범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죄의 상황적 요인이 범행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범죄기회이론, 그리고 범죄심리학 이론들 중 신호화된 보상과 부담의 강도와 함께 범죄행위의 기회들이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보는 Andrews와 Bonta(2003)의 ‘개인적, 개인간, 지역사회-강화(A Personal, Interpersonal, and Community-Reinforcement : PIC-R)조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들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밝혀진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범죄학에서의 보상과 부담

억제이론은 범치벌로 인한 손실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게 하며, 형벌이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할수록 범죄는 더욱 더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잡힐 확률이 높고,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을 받으며, 그 처벌이 엄격하다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김준호, 이성식, 1995). 기본적으로 억제가

론의 확대를 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대효용 원리는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Akers & Sellers, 2004, 2005). 이러한 동기요인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행위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김준호, 이성식, 1995).

또한 연성진(2003)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위라는 관점은 범죄도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손실을 고려한 후 개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선택이론은 18C 중엽 범죄학의 고전이론의 사상적 배경과도 통한다고 하였다. Jeremy Bentham이나 Cesare Beccaria로 대표되는 고전범죄학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기본가정을 하고 있고, 억제 이론가들이나 합리적 선택이론가들 역시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고, 구금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확실하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질문보다는 왜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상황적 주변요인을 강조하여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혹은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김준호, 이성식, 1995). 합리적 선택이론은 또한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과 범죄에 대한 지각된 부담과 보상들이 범행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Nagin & Paternoster, 1993). 즉, 범죄유발 상황의 주변적 여건들과 개인의 보상과 부담에 대한 주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에 맞고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황지태, 2004).

합리적 선택이론의 또 다른 형태로 범죄기회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직장활동 및 여가활동과 같은 활동패턴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생활양식이론과 사회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일상행위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둔 일상행위이론을 통합한 형태로 범죄발생의 기회요

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즉,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요인을 발견하려는 데 관심을 둔다(이성식, 1996).

이 이론은 범죄인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원인을 파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피해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범죄발생요인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일상적 생활양식과 활동패턴이 범죄피해 혹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김준호, 이성식, 1995).

Cohen, Kluegel, 그리고 Land(1981 : 이성식, 1996에서 재인용)는 범죄피해 발생요인으로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후 학자들은 이 요인들을 범죄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게 된다. 범죄자와의 접근성, 범죄위험에의 노출, 범죄대상의 매력, 감독의 부재가 그 주요 요인이다. 즉, 개인의 생활양식과 일상행위가 동기화된 범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대상으로서 매력적이고 또한 주위의 감독이 약하다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죄기회이론은 범죄예방에 있어서도 상황적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즉, 잠재적 범죄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룰 수 없도록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증가시키고, 범죄를 저지룰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범죄에 대한 보상을 감소시키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실추와 비난을 증대시키는 것 등이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영인, 염건명, 2005).

이처럼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죄기회이론은 범죄발생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개인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즉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은 범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죄 기회이론은 인간의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지 못지 않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인간이 과연 충분히 합리적인가 하는 점에 대한 비판과 범죄자의 범죄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김준호, 이성식, 1995; 이성식, 1996; 황지태, 2004; Akers & Sellers, 2004, 2005).

이에 최근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범행 선택의 과정

이 상대적이며 상황 의존적이고 개인의 학습 경험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억제이론과 같은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할 것을 주장하고(Cornish & Clarke, 1986 : 황지태, 2004에서 재인용), 정보의 부족, 도덕적 가치,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로 인한 선택의 한계와 제한을 고려하는 부분적 합리성 모형을 발전시켰다(Akers & Sellers, 2004, 2005).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여러 성향적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차에 따라 범 죄상황을 지각하는 것이 다름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김영신, 이훈구, 1993; 이성식, 1996; 황지태, 2004; Bouffard, 2002, 2007; Carmichael & Piquero, 2004; Nagin & Paternoster, 1993).

범죄심리학에서의 보상과 부담

범죄심리학 이론들 중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Andrews와 Bonta(2003)는 범죄행위에 대한 PIC-R 조망을 제안했는데, 이 조망은 여러 다양한 범죄행위 원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Andrews와 Bonta(2003)의 PIC-R은 범죄행위에 대한 원인적 차원을 크게 (1) 한 개인이 처해 있는 직접적인 상황, (2) 개인적 변인들, (3) 개인간 변인들, (4)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조적 변인들로 대별하고 있다. (4)의 변인들은 폭넓은 맥락과 좀 더 직접적인 맥락으로 나누어진다 (더 자세한 논의는 Andrews & Bonta, 2003을 참조).

또한, PIC-R 조망은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적 상황 또는 심리적 순간을, 한 개인이 범죄유발상황에 처했을 때 (1) 그 직접적인 상황의 특징들, 즉, 유혹물, 촉진물, 억제물, 스트레스원, (2) 범죄에 대해 선호적인 인지, 즉, 태도, 가치, 신념, 합리화 등, (3)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4) 반사회적 행동을 했던 경력, (5)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비교적 안정된 성격특성들, 즉, 충동성, 냉담함, 모험 추구성, 무책임, 낮은 언어적 지능 등, 그리고 (6) 자기관리와 문제해결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범죄행위를 적절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Andrews & Bonta, 2003). 즉, 직접적인 범죄유발상황에서 이런 범죄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변인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신호화하는데, 행동

발생의 가능성은 보상의 수, 다양성, 질, 크기, 빈도, 규칙성, 그리고 즉각성 등과 같은 보상의 강도에 따라 증가하고, 부담의 비중과 함께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Andrews와 Bonta(2003)는 범죄행동과 비범죄행동 모두가 선행사건과 결과사건들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신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보상과 부담의 통제조건들은 본질적으로 가산적이거나 감소적이고, 자동적으로 나타나거나, 대인적으로 매개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매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¹⁾

이와 같이 PIC-R 조망은 급진적 행동주의와 Albert Bandura의 사회적 학습·사회적 인지, 그리고 Donald Meichenbaum의 인지적 행동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범죄의사결정의 과정에 보상과 부담의 개념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태도, 반사회적 친구, 반사회적 행동력,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들, 이른바 범죄행위의 예측변인인 Big 4 요인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의 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여러 범죄학적, 범죄심리학적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과 부담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의 범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비록, 사람들이 매사에 매우 합리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보상과 부담에 대한 손익계산을 거친 후에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신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에 있어서는 자신과 주변의 여

1)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산적 보상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보상을 얻는 것인데, 긍정적인 자기-명명, 개인적 승인 등(개인적 수준)이나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 관심(대인적 수준)을 얻음으로써 개인에게 쾌락을 제공한다. 감산적 보상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어떤 것을 제거함으로써 보상을 얻는 것인데, 부정적인 자신의 자기-제거, 회피, 절감(개인적 수준)이나 자기에 대한 불인정의 감소(대인적 수준) 등이 이와 관련된다. 가산적 부담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어떤 것을 받음으로써 고통을 받는 것인데, 부정적인 자기-명명, 개인적 비난 등(개인적 수준)이나 타인의 불인정 등(대인적 수준)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감산적 부담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을 제거함으로써 좌절이나 실망을 겪게 되는 것인데, 긍정적인 명명의 자기-제거, 잠재적 손실에 대한 인식 등(개인적 수준)이나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의 감소 등(대인적 수준)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매개되지 않고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가·감산적 보상과 부담의 통제의 원천들은 행동 그 자체(예, 약물로 인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쾌락)와 관련된다(Andrews & Bonta, 2003).

러 상황을 고려하여 범행에 의해 얻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보상과 범행에 의해 잃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손익계산이 더 신중해질 것이고, 범죄행위의 실행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지각되는 보상과 부담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사람들이 하나의 유사한 범죄유발상황에서 범죄를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설적인 범죄유발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의 유형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범죄유발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범행을 하는 데 주로 작용하는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인 폭행, 방화, 살인 시나리오들에 따라 지각된 보상과 부담 유형들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에서의 전통적인 예측변인인 나이와 성별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06)에 따르면 폭행, 방화, 살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6배가량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각하는 보상·부담의 내용상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지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Sampson과 Laub(1993 : Bouffard, 200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잃을 것이 많게 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유대됨으로 인해 범행의 부담 요인으로 사회적 부담들을 더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정하고 확인해 보고자 했다.

셋째, Tunnell(1992 : Akers & Sellers, 2004, 2005에서 재인용)은 범법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범죄의 이득을 위험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도 범죄유발상황에 처했을 때, 보상을 부담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사람과 그 반대의 경우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비록 제한적이지만 가설적인 범죄유발상황에서 범죄실행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을 보상지향적이라 가정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부담지향적이라 가정하여, 보상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더 지각하는지, 그리고 부담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더 지각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보상과 부담의 유형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각 범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경험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표본

각 가설적 범죄시나리오에 대한 지각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산출하는 사전테스트는 경기도의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남자 183명과 여자 180명에게 실시되었다. 이후 본 테스트는 경기도의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남자 169명과 여자 201명에게 실시되었다. 본 테스트 피험자의 평균 나이는 약 22.62세($SD=4.215$, 범위는 18세에서 62세까지)였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상황의 실제 발생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도 경기도의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남자 26명과 여자 43명에게 실시되었다. 사전 테스트나 본 테스트, 추가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독립적인 집단이었고, 이들에게는 실험점수를 일부 인정해 주었다.

절차와 분석

본 테스트에 앞서 사전테스트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가설적 범죄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생각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각각 3개 이상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가설적 범죄 시나리오 설문지는 피험자 한 명 당 한 유형씩 무선적으로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 후 본 테스트에서는 사전 테스트에서 산출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각 범죄유형별 설문지의 예시 문항들에 제시하였다.2) 참가자들에게는 가설적 범죄시나리오를 읽고, 범죄실행가능성과 관련한 5점 Likert 척도(1점=매우 일어

나지 않을 것 같다, 5점=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에 응답하게 한 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생각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개씩 체크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성별과 나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테스트에서는 사전 테스트와 달리, 피험자가 폭행·방화·살인에 관한 각 가설적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SPSS 12.0 K를 사용하여, 각 가설적 범죄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보고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이 실시되었고, 부차적으로 각 범죄시나리오 유형별로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에 따라 각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보고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분석에 쓰인 보상과 부담 유형들은 다중응답분석 결과 전체 응답수의 10% 이상인 것들로만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각의 보상과 부담 유형들은 보고했으면 1, 보고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고, 본 분석의 종속변인으로 했다. 독립변인은 성별(여자는 0, 남자는 1), 나이, 범죄실행가능성(5점 척도)으로 하였다.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제이론의 연구들과 같이, 각 범죄상황에 대해 개인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 요인들을 산출하는 가설적 시나리오 설계(Hypothetical Scenario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보상과 부담 요인들을 산출하는 연구들에서는 시험부정행위(academic cheating), 줌도독질, 세금포탈, 음주운전, 성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여성이 개입된 폭행 상황 등과 같은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Bachman, Paternoster, & Ward, 1992; Bouffard, 2002, 2007;

Carmichael & Piquero, 2004; Grasmick & Bursik, 1990; Hochstetler, Delisi, & Puhmann, 2007; Nagin & Paternoster, 1993; Paternoster & Simpson, 1996), 강력범죄³⁾ 상황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이성식(1996)은 강도, 절도, 집단폭행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범죄상황에 관한 연구가 재산범죄나 비교적 경한 범죄 쪽으로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살인, 방화, 폭행(여성이 개입되지 않은) 등과 같은 강력범죄 상황에 대해서도 보상과 부담을 산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Piliavin, Thornton, Gartner, 그리고 Matsueda(1996)와 Bouffard(2007) 등도 심각한 범죄에 대한 보상과 부담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각의 가설적 시나리오 상황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06)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즉, 범죄 시간대, 피해자 피해 시 상황, 범죄자 공범관계, 범죄자 범행동기 등을 이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부록 참고).⁴⁾ 이 중 범죄자 범행동기가 '우발적(偶發的)'이라는 유목이 살인, 방화, 폭행(상해)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단순히 범행동기를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만 분석하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교정처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인 분노유발상황을 가설적 시나리오 상황으로 설정하여 범행에 따르는 통제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사전테스트에서 산출된 목록들은 될 수 있는 한 표현 그대로 본 테스트의 예시문항에 사실대로 제시하도록 노력하였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목록들은 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PIC-R의 조망에 의해, 즉 개인적·대인적·자동적으로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는 가산적·감산적으로 분류되어 본 테스트의 예시문항들에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폭행시나리오의 보상 예시목록에서 '자존심'이라는 항목은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보상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질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만만히 봤다는 생각에'와 같은 응답 등을 유사한 항목으로 보고 이 항목으로 분류했다.

3)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06)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는데, 여기서 다시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으로 나누고,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조직의 구성·활동 등으로 나누고 있다.

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시간대'는 '밤 시간대(20시부터 04시 이전)'가 살인은 약 38%, 방화는 약 43%, 폭행(상해)은 약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피해자 피해 시 상황'은 '답화 중'일 때가 살인은 약 33%, 폭행(상해)은 약 28%로 가장 빈번했고, 방화는 '부재 중'(약 24%), '취침 중'(약 9%)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범죄자 공범관계는 '단독 범행'이 살인 약 65%, 방화 약 80%, 폭행(상해) 약 75%를 차지했다. '범죄자 범행동기'는 '우발적'이라는 유목이 살인 약 37%, 방화 약 40%, 폭행(상해) 약 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화는 '우발적' 다음으로 '현실불만'(약 10%), '가정불화'(약 9%) 순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범죄유발상황의 가설적 시나리오는 보상과 부담유형을 산출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다.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던 연구자-도출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Bouffard(2002, 2007)가 제안하고 검증한 피험자-산출 기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⁶⁾ 즉, Bouffard의 피험자-산출 기법은 피험자들이 범죄시나리오에 대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그들 스스로 작성하게 하는 기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사전테스트의 피험자들에게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스스로 작성하게 하고, 본 테스트의 피험자들에게는 사전테스트에서 산출한 목록들을 나열해 주어 선택하게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범죄실행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각 시나리오에

- 5) 사전테스트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각 범죄유형의 시나리오들은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시나리오 상황의 주체를 1인칭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나, 보상과 부담 목록들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참가자들의 feedback이 있었고, 이는 범죄에 관해 묻는 시나리오의 특성상 방어기제가 발동하여 일어난 결과로 추정되어, 이러한 이유로 범죄실행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응답할 수 있고, 보상과 부담 목록들 또한 왜곡되어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좀 더 어려움 없이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각 시나리오 상황의 주체를 3인칭으로 수정하였다. 범죄행동에 관한 가설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상황의 주체는 대부분 3인칭으로 설정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의 내용은 사전테스트와 본테스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 6) Bouffard(2002)에 의하면, 연구자가 생각하는 여러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유형들이 범행 시에 고려되는 확실성과 심각성의 비율을 피험자에게 물어 범행 시 고려되는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뽑아내는 연구자-도출 기법은 심각한 방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제시하는 보상과 부담 유형들이 '점화효과(framing effect)'를 일으켜 피험자의 실제 의사결정과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편향가능성 때문에 과거 연구자-도출 기법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ouffard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경험적인 방법으로, 피험자가 시나리오 상의 범행에 대해 자기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작성하게 하는 피험자-산출 기법을 사용해야 피험자들의 실제 의사결정을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 자세한 논의는 Bouffard, 2002, 2007을 참고).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폭행이 2.56($SD=1.027$), 방화가 1.78($SD=0.887$), 살인이 2.11($SD=1.132$)이었다. 폭행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범죄실행가능성이 중간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약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의 실행가능성이 2.11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일면 각 범죄유발시나리오 상황의 주체가 3인칭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의사가 제3자에게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 따라 범죄실행가능성을 평가한 점수가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지 t-검증(양방향)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폭행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2.73($SD=1.077$), 여성 2.41($SD=.961$)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0.32점 정도 더 크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3.073$, $df=368$, $p=.002$).

방화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1.70($SD=.915$), 여성 1.84($SD=.860$)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0.14점 정도 더 크게 평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t=-1.539$, $df=367$, $p=.125$). 또한 살인에서의 평균점수도 남성 2.01($SD=1.200$), 여성 2.18($SD=1.068$)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0.17점 정도 더 크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t=-1.460$, $df=368$, $p=.145$).

각 시나리오에 따라 범죄실행가능성을 평가한 점수의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폭행에서만 유의미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와 살인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시나리오의 상황들이 현실세계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테스트의 참가자들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집단에게 각 범죄유발시나리오 상황을 읽게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를 %로 나타내 주십시오(0% :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 ~ 100% : 매우 있을 것 같다)'와 같은 식으로 범죄유발상황의 실제발생가능성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폭행은 63.91($SD=25.706$), 방화는 34.91($SD=24.273$), 그리고 살인은 34.60($SD=28.938$)으로 나타났다. 폭행유발상황을 제외하

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듯 보이지만, 이는 방화나 살인 범죄의 심각성과 실제 범죄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각된 보상과 부담의 내용

각 가설적 범죄시나리오에 따라 피험자들은 범행 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예상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3개씩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를 다중응답 빈도분석한 결과가 각 범죄유형별로 표 1,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은 피험자들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응답들을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범죄행동과 관련하여 지각되는 보상과 부담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범죄행동에 대한 보상과 부담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담유형들은 법적(체포, 선고 등 공식적 처벌), 사회적(평판, 비난 등), 도덕적(죄책감 등), 직업적 또는 학업적, 정서적(수치심, 난처함 등), 신체적(자기 상해, 타인 상해 등), 자기-존중 또는 부모의 지지 상실 등이고, 보상유형들은 재정적(돈, 물건 등), 사회적(동료의 인정, 지지, 지위상승 등), 정서적(스릴, 흥분, 자부심 등)인 것 등이다. 이들은 억제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바, 보상요인보다 부담요인을, 즉 범죄행위의 억제 요인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들어 공식적 처벌에 더해 비공식적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PIC-R조망(Andrews & Bonta, 2003)에서는 보상과 부담 요인들을 감산적·가산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더해 통제의 매개차원에서 개인적, 자동적, 대인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조망은 공식적 처벌에 의해 범죄행동이 억제되었다는 증거는 약하다고 주장하며, 범죄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처벌보다는 비공식적 처벌이, 그리고 가산적 처벌보다는 감산적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범죄행동의 대안적 행동을 보상함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해야 범죄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 범죄유형별로 산출된 주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이러한 이론적 배경 아래에서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에는 폭행시나리오에서 보고된 보상과 부담목록들

표 1. 폭행 시나리오에서의 보상과 부담 목록

피험자	응답수	응답수에 대한 %	피험자수에 대한 %
보상(n=368)			
자존심	383	30.8	90.5
자기 몸 보호	198	18.3	53.8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	157	14.5	42.7
의협심, 혼내주는 것	151	14.0	41.0
가만히 있으면 창피함	115	10.6	31.3
화풀이	83	7.7	22.6
경찰발각위험 낮음	28	2.6	7.6
친구들 인정, 칭찬	11	1.0	3.0
재미	6	.6	1.6
전 체	1082	100.0	294.0
부담(n=370)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214	19.6	57.8
법적 처벌의 두려움	211	19.3	57.0
자기 몸의 부상	166	15.2	44.9
싸우면 기분이 더 나빠짐	123	11.3	33.2
경찰발각 위험 높음	100	9.1	27.0
죄책감, 도덕적 부담	76	7.0	20.5
제3자의 피해 염려	74	6.8	20.0
부모님께 죄송함	54	4.9	14.6
보복에 대한 두려움	35	3.2	9.5
싸우면 창피함	26	2.4	7.0
주위사람들의 비난	7	.6	1.9
친구 상실 염려	7	.6	1.9
전 체	1093	100.0	295.4

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폭행 시의 보상목록들을 살펴 보면, ‘자존심’은 응답수에 대한 백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총 피험자 수의 90.5%가 이 항목을 선택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은 ‘자기 몸 보호’(응답수의 18.3%, 총 피험자 수의 53.8%)였고,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응답수의 14.5%, 총 피험자 수의 42.7%)는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것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선택은 ‘의협심, 혼내주는 것’(응답수의 14.0%, 총 피험자수의 41.0%) 항목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창피함’(응답수의 10.6%, 총 피험자수의 31.3%)은 다섯 번째로 많이 응답한 것이었다. 이밖에, ‘화풀이’, ‘경찰발각위험 낮음’, ‘친구들 인정, 칭찬’, ‘재미’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중, ‘자존심’은 폭행의 동기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항목이며,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 또한 유사한 항목으로 보인다. ‘자기 몸 보호’는 신

체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자동적으로 나타난 반응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에 대한 보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심, 혼내주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한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동기요인으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창피함’과 ‘친구들 인정, 칭찬’은 폭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발각 위험 낮음’은 기회이론에서의 범죄발생 주요원인 중 하나인 ‘감독의 부재’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적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로서 보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폭행시나리오에서 보고된 부담목록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총 응답수의 19.6%, 총 피험자수의 57.8%)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법적 처벌의 두려움(응답수의 19.3%, 피험자수의 57.0%)’이었다. 다음으로는 ‘자기 몸의 부상’(응답수의 15.2%, 피험자수의 44.9%), ‘싸우면 기분이 더 나빠짐’(응답수의 11.3%, 피험자수의 33.2%), ‘경찰발각위험 높음’(응답수의 9.1%, 피험자수의 27.0%) 순이었다. 이밖에, ‘죄책감, 도덕적 부담’, ‘제3자의 피해 염려’, ‘부모님께 죄송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싸우면 창피함’, ‘주위사람들의 비난’, ‘친구 상실 염려’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중,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존중의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 명명의 자기제거와 같은 부담유형으로 볼 수 있고, ‘자기 몸의 부상’은 폭력행위에 대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위협으로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죄책감, 도덕적 부담’과 ‘부모님께 죄송함’은 죄책감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적 자기-명명, 개인적 비난 등을 가져오는 부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억제이론과 합리적선택이론에서, ‘경찰발각위험 높음’은 범죄기회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범죄 억제 요인으로 이는 공식적 기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담요인으로 볼 수 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공격과 같은 행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싸우면 창피함’과 ‘주위사람들의 비난’, ‘친구 상실 염려’는 사회적 부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방화시나리오에서

표 2. 방화 시나리오에서의 보상과 부담 목록

	응답수	응답수에 대한 %	피험자수에 대한 %
보상(n=368)			
화풀이	291	26.8	79.1
경쟁사에 대한 복수	255	23.5	69.3
가난에 대한 분노	192	17.7	52.2
사회에 대한 원망	179	16.5	48.6
자신의 집이 나아질 것 같음	75	6.9	20.4
부모님에 대한 반항	36	3.3	9.8
경찰발각 위험 낮음	29	2.7	7.9
자존감 회복	25	2.3	6.8
스릴, 재미	5	.5	1.4
전 체	1087	100.0	295.4
부담(n=370)			
달라질 것이 없음	234	21.3	63.2
죄책감, 도덕적 부담	226	20.6	61.1
법적 처벌의 두려움	198	18.0	53.5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불안	163	14.8	44.1
부모님께 죄송함	94	8.6	25.4
경찰발각 위험 높음	71	6.5	19.2
제3자의 피해 염려	61	5.6	16.5
주위사람들의 비난	21	1.9	5.7
친구 상실 염려	12	1.1	3.2
피해 입을 경쟁사가 불쌍함	15	1.4	4.1
보복에 대한 두려움	4	.4	1.1
전 체	1099	100.0	297.0

보고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방화시나리오에서 보고한 보상 목록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화풀이’(응답수의 26.8%, 피험자수의 79.1%)를 가장 많이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사에 대한 복수’(응답수의 23.5%, 피험자수의 69.3%)와 ‘가난에 대한 분노’(응답수의 17.7%, 피험자수의 52.2%), ‘사회에 대한 원망’(응답수의 16.5%, 피험자수의 48.6%)과 같은 항목을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자신의 집이 나아질 것 같음’, ‘부모님에 대한 반항’, ‘경찰발각위험 낮음’, ‘자존감 회복’, ‘스릴, 재미’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중 ‘화풀이’, ‘경쟁사에 대한 복수’, ‘사회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분노’ 등은 복수나 분노 동기 방화범죄의 원인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방화의 부담목록들 중 가장 많이 보고된 항목은 ‘달라질 것이 없음’(응답수의 21.3%, 피험자수의 63.2%)이었고, 다음으로는 ‘죄책감, 도덕적 부담’(응답수의 20.6%,

피험자수의 61.1%)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법적 처벌의 두려움’(응답수의 18.0%, 피험자수의 53.5%)이었고,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불안’(응답수의 14.8%, 피험자수의 44.1%)이었다.

이밖에 ‘부모님께 죄송함’, ‘경찰발각 위험 높음’, ‘주위 사람들의 비난’, ‘친구 상실 염려’, ‘피해 입을 경쟁사가 불쌍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중 ‘죄책감, 도덕적 부담’과 ‘부모님께 죄송함’과 같은 죄책감과 관련된 항목들은 폭행에서 지각된 부담 순위와는 달리 상당한 빈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살인시나리오에서 보고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살펴볼 것인데, 살인의 보상목록들은 폭행의 보상목록들과 유사하지만, 그 빈도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화풀이’(응답수의 33.7%, 피험자수의 97.5%)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폭행에서의 보상의 빈도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풀이’ 다음으로는 ‘자존심’(응답수의 24.2%, 피험자수의 70.0%), ‘자기 목숨 보호’(응답수의 14.7%, 피험자수의 42.5%)와 같은 항목들의 보고율이 높았다. 이밖에, ‘죽어 마땅한 사람임’, ‘타인들이 나를 무시 못 함’, ‘다시는 그 사람과 싸울 일 없음’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중 ‘자기 목숨 보호’는 폭행에서의 ‘자기 몸 보호’와, ‘죽어 마땅한 사람임’은 폭행에서의 ‘의협심, 혼내주는 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맥락으로서 보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에서의 부담목록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죄책감, 도덕적 부담’(응답수의 19.6%, 총 피험자수의 58.4%)이었고,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안 남’(응답수의 17.4%, 피험자수의 51.6%)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법적 처벌의 두려움’(응답수의 14.3%, 피험자수의 42.4%)이었고,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은 ‘내게 이득이 될 것이 없음’(응답수의 13.2%, 피험자수의 39.2%)이었다. 이밖에, ‘뒤처리에 대한 부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께 죄송함’, ‘그래도 동료니까’, ‘경찰발각 위험 높음’ 등이 보고되었다.

살인에서도 폭행과 달리 ‘죄책감, 도덕적 부담’과 ‘부모님께 죄송함’과 같은 죄책감과 관련된 항목들이 매우 높

표 3. 살인 시나리오에서의 보상과 부담 목록

	응답수	응답수에 대한 %	피험자수에 대한 %
보상(n=367)			
화풀이	358	33.7	97.5
자존심	257	24.2	70.0
자기 목숨 보호	156	14.7	42.5
죽어 마땅한 사람임	97	9.1	26.4
타인들이 나를 무시 못 함	91	8.6	24.8
다시는 그 사람과 싸울 일 없음	69	6.5	18.8
경찰발각 위험 낮음	25	2.4	6.8
살인의 회멸	9	.8	2.5
전 체	1062	100.0	289.4
부담(n=370)			
죄책감, 도덕적 부담	216	19.6	58.4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안 남	191	17.4	51.6
법적처벌의 두려움	157	14.3	42.4
내게 이득이 될 것이 없음	145	13.2	39.2
뒤처리에 대한 부담	84	7.6	22.7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80	7.3	21.6
부모님께 죄송함	61	5.5	16.5
그래도 동료니까	59	5.4	15.9
경찰발각 위험 높음	47	4.3	12.7
그의 가족들에게 미안함	26	2.4	7.0
주위사람들의 비난	20	1.8	5.4
친구 상실 염려	14	1.3	3.8
전 체	1100	100.0	297.3

은 보고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동료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난’, ‘친구 상실 염려’와 같은 사회적 부담 요인들은 폭행에서 보고된 비율과 유사하게 가장 적게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폭행, 방화, 살인시나리오에서 개인들이 지각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상황특성상 모든 범죄유발상황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노유발 상황’을 공통적인 시나리오 상황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분노유발상황에서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에 따른 보상·부담 목록들의 보고가능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기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표 4. 폭행의 보상과 부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상들 1. (N=369)	‘자존심’ B (Exp B)	‘자기 몸 보호’ B (Exp B)	‘안 싸우면 후회’ B (Exp B)	‘의협심’ B (Exp B)	‘사회적’ B (Exp B)
남성	-.394 (.675)	-.175 (.840)	-.789*** (.455)	.294 (1.341)	.555** (1.742)
나이	.066 (1.068)	.003 (1.003)	-.093** (.911)	-.011 (.989)	.062** (1.064)
범죄실행가능성	.405** (1.499)	-.101 (.904)	.160 (1.174)	-.158 (.854)	.043 (1.044)
부담들 (N=369)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B (Exp B)	‘법적 처벌’ B (Exp B)	‘자기 몸 부상’ B (Exp B)	‘죄책감’ B (Exp B)	‘싸우면 기분 더 나빠짐’ B (Exp B)
남성	-.392* (.676)	.150 (1.162)	-.293 (.746)	.227 (1.255)	-.176 (.839)
나이	.045 (1.046)	-.066** (.936)	.004 (1.004)	.014 (1.014)	.005 (1.005)
범죄실행가능성	.053 (1.054)	-.008 (.992)	-.062 (.940)	-.011 (.989)	-.127 (.881)

* $p < .10$ (양방향), ** $p < .05$, *** $p < .01$

연구들에서 범죄행위와 일반적으로 관련된다고 밝혀진 일부 인구학적 변인들(성, 나이)에 따라 어떤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해 제한적으로나마, 범죄실행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을 보상지향적이라 가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부담지향적이라 가정했을 때, 보상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보상목록과 부담목록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4에는 폭행의 보상과 부담 목록들에 대한 성별·나이·범죄실행가능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폭행의 보상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자존심’은 범죄실행가능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 보고할 가능성이 증가했고($B=.405$, $Wald=4.751$, $p=.029$),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가만히 있으면 창피함’, ‘친구 인정, 지지’)인 보상목록을 더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B=.555$, $Wald=5.906$, $p=.015$),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를 보상으로 보고할 가능성은 더 낮았다($B=-.789$, $Wald=12.386$, $p=.000$).

또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보상목록을 더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고($B=.062$, $Wald=5.271$, $p=.022$),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를 더 보고할 가능성이 낮았다($B=-.093$, $Wald=6.550$, $p=.010$). 폭행의 부담 목록들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싸움의 부담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낮았고($B=-.392$, $Wald=3.282$, $p=.070$), 나이 든 사람일수록 ‘법적 처벌’($B=-.066$, $Wald=5.031$, $p=.025$)을 보고할 가능성은 감소했다.

표 5에는 분노유발적 방화시나리오의 보상과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보상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사회 원망’을 보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낮았다($B=-.053$, $Wald=2.991$, $p=.084$). 부담 목록들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미래 불안(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불안)’은 범죄실행가능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B=.204$, $Wald=2.906$, $p=.088$). 방화의 부담유형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죄책감’과 관련된 항목들(죄책감, 부모님께 죄송함)과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6에는 살인시나리오에서의 보상과 부담목록들에 대

표 5. 방화의 보상과 부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상들 (N=369)	‘화풀이’ B (Exp B)	‘경쟁사 복수’ B (Exp B)	‘가난에 대한 분노’ B (Exp B)	‘사회 원망’ B (Exp B)
남성	-.027 (.974)	-.216 (.806)	-.178 (.837)	-.123 (.884)
나이	.025 (1.025)	-.023 (.978)	.025 (1.026)	-.053* (.948)
범죄실행가능성	-.151 (.860)	-.036 (1.036)	.005 (1.005)	.170 (1.185)
부담들 (N=369)	‘죄책감’ B (Exp B)	‘달라질 것 없음’ B (Exp B)	‘법적 처벌’ B (Exp B)	‘미래 불안’ B (Exp B)
남성	-	-.182 (.834)	-.189 (.828)	-.172 (.842)
나이	-	.023 (1.024)	-.030 (.971)	-.041 (.959)
범죄실행가능성	-	-.199 (.819)	.011 (.989)	.204* (1.227)

* $p < .10$ (양방향)

표 6. 살인의 보상과 부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상들 (N=369)	‘화풀이’ B (Exp B)	‘자존심’ B (Exp B)	‘자기 목숨 보호’ B (Exp B)	
남성	-	.354 (1.425)	-.190 (.827)	
나이	-	-.014 (.986)	-.012 (.988)	
범죄실행가능성	-	-.037 (.963)	-.232** (.793)	
부담들 (N=369)	‘죄책감’ B (Exp B)	‘사람을 죽일 용기 안 남’ B (Exp B)	‘법적 처벌’ B (Exp B)	‘이득될 것 없음’ B (Exp B)
남성	-.147 (.864)	-.773*** (.461)	.011 (1.011)	-.026 (.974)
나이	-.012 (.988)	-.043 (.958)	.017 (1.017)	-.018 (.982)
범죄실행가능성	-.107 (.898)	.118 (1.125)	-.006 (.994)	-.119 (.888)

** $p < .05$ (양방향), *** $p < .01$

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보상 목록들을 살펴 보면,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자기 목숨 보호’ 항목은 범죄실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부적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B = -.232$, $Wald = 5.781$, $p = .016$).

살인에 대한 부담들 중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안 남’이라는 항목을 보고할 가능성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낮았다($B = -.773$, $Wald = 12.880$, $p = .000$). 살인에서도 보상목록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화풀이’의 경우에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범죄유발상황에 처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에는 그 즉각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성향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범행과 관련한 보상과 부담들을 신호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각된 보상과 부담의 주관적인 손익계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적 범죄유발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목록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즉각적인 범죄유발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범행을 하는 데 주로 작용하는 보상과 부담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 범죄유형에 따라 개인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상목록들 중, 폭행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자존심’과 세 번째로 많이 응답된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 그리고 살인의 보상목록 중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자존심’은 합리적 선택이론 조망의 자기-존중, 자부심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PIC-R 조망의 부정적 자기-명명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분하자면,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감산적 보상유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폭행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자기 몸 보호’와 살인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응답된 ‘자기 목숨 보호’와 같은 경우는 신체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동적으로 나타난 감산적 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폭행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응답된 ‘의협심, 혼내주는 것’과 살인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응답된 ‘죽어 마땅한 사람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응징이나 복수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죽어 마땅한 사람임’ 같은 경우에는 Albert Bandura와 그의 동료들(1996 : Andrews & Bonta, 2003에서 재인용)이 기술한 ‘도덕적 이탈 기제’ 중 ‘비인간화(dehumanization)’에 해당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⁷⁾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보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폭행에서는 거의 보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방화나 살인에서는 보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이 ‘화풀이’ 항목인데, 이는 좌절이나 고통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기 그 대상은 다르지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자동적으로 나타난 감산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폭행과 살인에서의 사회적 보상요인은 두 범죄 유형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화에서 사회적 보상유형을 보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폭행의 ‘재미’나 방화의 ‘스릴, 재미’, 살인의 ‘희열’과 같은 목록들이 본 연구에서 범행의 보상요인으로 보고된 빈도수는 매우 적었던 반면, 강도, 절도, 집단폭행 상황을 가설적 시나리오 상황에 반영하여 연구한 이성식(1996)은 ‘재미, 스릴’이 범죄행동의 가장 중요한 발생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식의 연구의 표본이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고, 그의 연구는 연구자-도출 기법을 사용하였는 바, 이에 의해 편향된 반응이 산출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범죄유형에 따라 보고된 부담 목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죄책감 등은 부정적 자기-명명이나 개인적 비난 등을 초래하는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폭행에서 죄책감과 관련된 항목들의 빈도수는 상당히 적었던 반면, 방화와 살인에서는 모두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을 볼 수 있다. ‘법적 처벌의 두려움’과 ‘경찰발각위험 높음’ 등은 폭행이나 방화, 살인에서 상당히 높은 보고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공식적 기관의 범죄 억제 활동에 의해 개인들에게 조건화되어 자동적으로 나타난 가산적 부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에 발각될 위험을 보고한

7) Albert Bandura와 그의 동료들은 Sykes와 Matza의 중화기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매개된 자기규제과정인 ‘도덕적 이탈 기제’에 의해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기-처벌이 회피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보상의 표현으로 전환되기까지 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는데, 이 기제들 중 ‘비인간화’는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을 해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는 것이다.

항목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주요 골자인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행동상황의 주변 측면들이 부담의 원천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폭행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과 네 번째로 많이 보고된 ‘싸우면 기분이 더 나빠짐’이나 살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안 남’과 같은 항목들의 경우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자기-존중의 상실과 관련되고, PIC-R 조망의 긍정적 자기-명명의 자기 제거와 관련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감산적 부담유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방화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달라질 것 없음’이나 살인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고된 ‘내게 이득 될 것 없음’ 항목들의 경우 유사한 기제가 발동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결과 자기 규제가 일어난 것으로, 자기 평가를 통해 자기-부담을 산출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고, 구분하자면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부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방화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고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불안’과 같은 경우는 법적·사회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자기-지시가 일어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부담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부담요인과 관련된 항목들은 대인적으로 매개된 부담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폭행, 방화, 살인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게 보고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범죄 유형별로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나리오의 상황특성상 분노유발상황이 아닌 모든 범죄상황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범죄실행가능성의 측정치에 따라 보상지향적·부담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분노유발적인 폭행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인적으로 매개된 가·감산적 보상들, 즉 동료들의 인정과 같은 사회적 지지 요인들 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나 안

싸우면 후회할 것 같다는 것과 같은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감산적 보상들, 즉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한 자기-평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범죄실행가능성을 크게 지각한 사람들일수록 폭행상황의 보상요인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제한적이지만, 이는 보상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담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보상인 자존심을 분노유발적 폭행상황의 동기요인으로서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보고된 비율은 낮았지만, 부분적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상요인으로 더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분노유발적 폭행범죄에 한해서는 더 자주 개입하게 되는 동기요인이 사회적 지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체면을 더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폭행상황에서, 위협에 대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려 싸움을 했다는 것은 일면 자동적인 감산적 보상행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폭행시나리오에서는 싸움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싸움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몸 보호’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또한 자기-평가를 통해 일탈행동에 대한 자기-보상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행에 대한 부담 목록들 중에서 ‘죄책감, 도덕적 부담’, ‘부모님께 죄송함’과 같은 죄책감과 관련된 부담들은 과거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잠정적으로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둘을 합한다 해도 부담목록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노유발적 폭행범죄에 대한 순수한 죄책감과 같은 억제력은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사회적 부담요인들은 우발적인 분노유발적 폭행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의 부담요인으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 처벌’과 ‘발각 위협’과 같은 공식적 기관의 범죄 억제력은 과거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과 일치하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과거 범죄행동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산출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과거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연구의 우발적인 폭행 시나리오의 보상 목록에서의 ‘안 싸우면 나중에 후회’, ‘의협심, 혼내주는 것’, ‘가만히 있으면 창피함’ 등, 그리고 부담 목록에서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싸우면 기분이 더 나빠짐’ 등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혀진 보상과 부담목록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화의 보상 목록들 중에서는 ‘화풀이’, ‘경쟁사에 대한 복수’와 ‘사회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분노’와 같은 항목들을 많이 보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복수에 의한 것으로, 좌절대상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자동적으로 나타난 감산적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좌절을 안겨준 대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명명이나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에 대한 잘못된 귀인이나 책임전가와 같은 도덕적 이탈기제들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감산적 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항목들은 복수나 분노 동기 방화범죄의 원인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예, 박형민, 2004), ‘자신의 집이 나아질 것 같음’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보상목록이라 할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 또한 방화의 독특한 보상목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에게 입은 좌절이라는 심리적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가 하나의 공격적 표출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화의 부담목록들을 분석한 결과, 분노유발적 방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난과 같은 개인적으로 매개된 부담요인보다는 죄책감과 같은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부담요인과 공식적 처벌에 의해 조건화된 억제력과 같은 자동적으로 나타난 부담요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담목록들 중 ‘죄책감’, ‘법적 처벌의 두려움’, ‘발각 위협’ 등은 이전의 방화에 관한 연구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부담요인들이지만, ‘달라질 것이 없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불안’ 등이 상당

한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혀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분노유발적 상황의 살인에서도 폭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매개된 보상들, 즉 사회적 보상들의 보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화풀이’나 ‘자기 목숨 보호’와 같이 좌절이나 신체적 고통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동적으로 나타난 감산적 보상요인과 범죄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잘못된 결과에 기인한 개인적으로 자기-매개된 가산적 보상요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목숨 보호’와 같은 신체적 위협에 대해 자동적으로 나타난 가산적 보상요인은 범죄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즉 제한적이거나 부담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분노유발적 살인에서 지각된 부담들 중에서는, 도덕적 부담요인들과 법적 부담요인들이 사회적 부담요인들에 비해 대다수 사람들에게 빈번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안 남’과 같은 도덕적 부담요인이 살인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함을 추정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각 우발적인 범죄유발적 시나리오에 따라 개인들이 지각하는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또한 범죄유형별로 개인적인 변인과 상황적 변인간의 관계를 제한적으로나마 탐색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각 범죄상황들에서 공통적인 보상과 부담 요인들이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우발적인 분노유발적 범행의 동기요인에 있어서나 억제요인에 있어서 법적 처벌이나 자존심과 같은 요인들보다 사회적인 지지 요인들의 보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Bandura와 같은 사회학습이론가나 Andrews와 Bonta와 같은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범죄심리학자, Akers와 같은 사회학습이론을 범죄학에 적용한 범죄학자 등이 범죄행동에 대한 보상과 부담요인으로 사회적인 지지 요인들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이 실제 범죄자가 아닌 대학생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우발적인 분노유발적 상황에서는 동기요인이나 억제요인에 사회적 지지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Bouffard(2002, 2007)가 증명한 것과 같이 과거 합리적 선택의 연구자-도출 기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범죄상황과 관련된 독특한 목록들이 피험자-산출 기법을 통해 다양하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피험자-산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각 범죄유형에 따라 보상과 부담 요인들이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한적으로나마 분노유발적인 범죄상황에서는 보상지향적 경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중히 여기며,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에 대해서는 덜 지각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범죄행동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덜 느끼고, 폭행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싸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고, 나이에 따라서도 지각된 보상과 부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범죄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요인들을 더 찾고, 상황에 대해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과거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범죄행동에 대한 제한된 보상과 부담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와 비교하여 직접적인 유발적 범죄유발상황에서 개인들이 지각하는 좀 더 다양하고 사실적인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각 가설적 시나리오 상황이 과거 연구들과 차이가 있어 범죄행동에 대한 보상과 부담들의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었던 한계가 있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목록들을 가·감산적으로 분류하여⁸⁾ 각 범죄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제한적으로나마 범죄실행가능성의 측정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상지향적·부담지향적 경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했고,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와 살인의 범죄실행가능성의 평균점수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상당히 비중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범죄상황의 주체를 1인칭이 아닌

3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아닌 제 3자에게 투사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의사를 물어 나타난 결과로 일부 해석될 수도 있으며, 범죄유형별로 범죄의 심각성 등을 명확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단지 범죄실행가능성의 측정치만을 가지고 보상지향적·부담지향적인 경향성을 추론하였고, 이들 성향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범죄유발시나리오의 실제 발생가능성이 범죄의 심각성과 실제 발생빈도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비중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폭행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주목적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보상과 부담의 목록들을 찾아내는 것이었기에 연구의 초점이 이에 맞추어졌고,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변인들이 성별, 나이, 범죄실행가능성에 한정되어 각 유발적인 분노유발적 범죄상황과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 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지각을 측정하여 이를 추론하였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유발적인 분노유발적 상황 설정의 틀 안에서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가설적 시나리오를 더욱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욱 더 현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범죄실행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상지향적 성향과 부담지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측정하여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 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범죄자와 일반인에 대한 대등한 표집을 통해 이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 범죄심리학적 범죄발생적 요인들과 범죄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보상과 부담 목록들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해를 더욱 깊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유발적 분노유발적인 범죄상황은 범죄자가 음주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이임(단, 폭행상황은 모르는 사이임), 그리고 단독

8) Hunt와 Azrin(1973 : Anderews & Bonta, 2003에서 재인용)은 범죄의 동기이론과 억제이론들을 가·감산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감산적 처벌은 효과적인 범죄자 개입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범행 등을 가정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우발적 분노유발적인 범죄상황의 틀 안에서 여타의 상황적 요인들을 다양화하여 폭행·방화·살인 범죄에 대한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우발적인 분노유발적 범죄상황에서의 범죄행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으로나마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상과 부담목록들은 범죄예방정책과 범죄자 처우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Andrews와 Bonta(2003)가 제안한 것처럼, 비 일탈적 대안행동들, 즉 범죄유발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 등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참는 행동들이 높은 개인적·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 일부 범죄행동들에 대한 동기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Hunt와 Azrin(1973 : Andrews & Bonta, 2003에서 재인용)이 지적한 것과 같이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서 대인관계적 처벌과 대안행동의 강화와의 연합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밝혀진 폭행의 보상과 부담 목록들을 보면, 폭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응답수의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던 반면, 사회적 부담 요인들은 응답수의 1.2%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거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우발적인 분노유발적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비교적 관대한 것과 같은 대인적인 영향이나 보다 크게는 지역사회적인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죄자의 가족들이나 동료들, 또는 가까운 이웃들이 범죄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게 하고, 분노를 참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대안행동에 대해 그 행동은 비겁하거나 비굴한 행동이 아니며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범죄자가 인식하도록 칭찬이나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친사회적인 대안행동에 대한 보상은 늘어나게 되고, 범죄행동에 대한 사회적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어 개인은 폭력행동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

에 따라 폭력행동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교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산적·감산적 보상과 부담들을 적절히 응용하여 범죄자의 또는 일반인의 범죄동기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 범죄행동에 대한 보상들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범죄행동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감산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범죄예방과 범죄자 교정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신, 이훈구 (1993). 범죄에 대한 자기-통제이론과 선택이론의 통합.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05-216.
- 김준호, 이성식 (1995).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형사정책, 7, 105-125.
- 대검찰청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25.
- 연성진 (2003).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 이성식 (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 최영인, 염건령 (2005). 합리적 범죄선택이론. 서울 : 백산출판사.
- 홍대식 (2004). 사회심리학. 서울 : 박영사.
- 황지태 (2004).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 Akers, R., & Sellers, C. S. (2005). 범죄학 이론[Criminological Theories : Introduction, Evolution, and Application].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역). 경기 : 나남출판(원전은 2004에 출판).
- Andrews, D. A., & Bonta, J. (200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3rd ed.). OH : Anderson publishing co.
- Bachman, R., Paternoster, R., & Ward, S. (1992). *The Rationality of Sexual Offending : Testing a Deter-*

- rence/Rational Choice Conception of Sexual Assault. *Law & Society Review*, 26(2), 343-372.
- Bouffard, J. A. (2002).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Using Subject-Generated Consequences in Tests of Rational Choice Theory. *Justice Quarterly*, 19(4), 747-771.
- Bouffard, J. A. (2007). Predicting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Relevance of Crime's Costs and Benefits in a Test of Rational Choic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1(4), 461-485.
- Carmichael, S., & Piquero, A. R. (2004). Sanctions, Perceived Anger, and Criminal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4), 371-393.
- Franklin II, C. W. (2005). 이론으로 본 사회심리학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정창수 역). 서울 : 그린(원전은 1982에 출판).
-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 Rational Choice :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 Society Review*, 24(3), 837-861.
- Hochstetler, A., Delisi, M., & Puhmann, A. M. (2007).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Offending Frequency : A Replication Study. *Justice Quarterly*, 24(4), 582-599.
- Nagin, D. S., & Paternoster, R. (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 Society Review*, 27(3), 467-496.
- Paternoster, R., & Simpson, S. (1996). Sanction Threats and Appeals to Morality : Testing a Rational Choice Model of Corporate Crime. *Law & Society Review*, 30(3), 549-583.
- Piliavin, I., Thornton, C., Gartner, R., & Matsueda, R. L. (1986). Crime, Deterrence, and Rational Choi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01-119.
- Taylor, S. E., & Peplau, L. A., & Sears, D. O. (2006). *Social Psychology*(12th ed.). NJ : Pearson Prentice Hall.

Perceived Rewards and Costs Relevant to the Criminal Conduct

Seung-Hyuk Choi Si-Up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o find more detailed and realistic items about any perceived rewards and costs under the assumption that people had a consider pros and cons from any of their behavioral outcomes, that decision-making process was about benefiting themselves, when people were placed within a specific criminogenic situation. The method in this study was applied a 'subject-generated' technique that was proposed and demonstrated by Bouffard(2002, 2007), presented a hypothetical criminogenic scenario relevant to violence, arson, and homicide to 370(169 male, 201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discovered various detailed items about their own costs and rewards of the criminal conduct. Multiresponse frequency analysis of their response was done. The most frequently responded items were : 'self-esteem'(rewards of violence), 'to be bad guys as he'(costs of violence); 'vent one's anger'(rewards of arson), 'be unchanged'(costs of arson); 'vent one's anger'(rewards of homicide), 'guilt feeling'(costs of homicide). Als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requently responded items were performed to explore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by gender, age, and offending probability level.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of rewards and costs were : 'social support'(rewards of violence) was higher for male than female, 'legal punishment'(costs of violence) decreased as one became older; 'resentment of society'(rewards of arson) decreased as became older; 'protecting one's own life'(rewards of homicide) decreased as subject have a larger the probability of offending, and 'lack of courage to kill'(costs of homicide) was less males than females. In these results, detailed and realistic items were analyzed by perspective of PIC-R. In addition to this, the analyses of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is study were compa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of future research,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crime prevention should be discussed.

Keywords: Crimes; Rewards and Costs; PIC-R; Rational Choice Theory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4월 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5월 27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5월 28일

부 록

시나리오 1. 폭행

갑은 저녁 12시쯤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20대 중반가량 되어 보이는 불량스러운 사람이 췌러봤다며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으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다. 기분이 몹시 상한 갑은 그에게 맞서서 대들었고,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갑은 초범이 전치 6주가량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보통 구속수사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나리오 2. 방화

갑은 부모님에게 용돈문제로 자주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데 그 날은 다른 때 보다 더욱 더 꾸지람이 심해,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다. 아버지가 IMF 이전에는 건설하청업체를 운영하여 갑의 집은 그런대로 풍족했으나, IMF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갑은 돈을 삭이기 위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셔도 돈은 삭지 않아 새벽 1시쯤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건설하청업체의 공사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갑은 그곳에 쌓여 있던 자재 더미에 불을 질러 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갑은 방화가 중한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

시나리오 3. 살인

갑은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지 않게 헤어진 후, 새벽 2시쯤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째,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좀 전 술자리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모욕했던 동료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다짜고짜 ‘개00,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해왔다. 화가 나 있던 갑은 그와 뒤엉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싸움은 점점 격해져, 갑과 그는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 갑은 그를 죽여 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치솟았고, 그 때 옆에 돌이 보였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돌을 손에 집어 들었다.